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의3에서 규정하고,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수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출입·검사·수거를 면제하는 규정과 정기조사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8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인증 및 정기조사 등의 업무”를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등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안 제48조의3의 제목 “(교육훈련 수료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조사·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

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조사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부칙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8조(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① ~ ⑦ (생략)	제48조(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적용업 소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u>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인증을 취 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식품안전관리인 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u>	⑧ ----- ----- ----- ----- ----- ----- <u>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의 준수 여부에 관 한 조사·평가(이 하 “정기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 하여야 하고, 소비 자 또는 소비자단 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사·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u> ----- ----- -----	<u><삭 제></u>

에 해당할 경우 인
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⑨ · ⑩ (생 략)

⑪ 식품의약품안전
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
관의 장을 포함한
다),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적용업
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
22조에 따른 출입
·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
지사 또는 시장·

1. ~ 4. (현행과 같
음)

⑨ · ⑩ (현행과 같
음)

⑪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적용업
소에 대하여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
생관리시설 및 위
생설비시설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⑨ · ⑩ (개정안과
같음)

⑪ 식품의약품안전
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
관의 장을 포함한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적용
업소에 대하여 관
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
른 출입·검사·수
거 등을 하지 아니
하게 할 수 있으
며, 시·도지사 또

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⑫ -----

-----기술지원, 인증 및 정기조사 등의 업무-----

-----.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등의 업무-----

⑬ · ⑭ (생 략) <신 설> 제48조의3(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적용업 소에 대한 조사· 평가 등) 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식 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에 대하 여 식품안전관리인 증기준의 준수 여 부와 제48조제5항 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 회 이상 조사·평 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	⑬ · ⑭ (현행과 같음) ⑮ 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교육훈련 수료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① -- -----식 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에 대하 여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 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 여야 한다. <삭 제>	----- -----. ⑬ · ⑭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제48조의3(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적용 업소에 대한 조사 ·평가 등) ① --- -----식 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업소에 대 하여 매년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 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 부를 조사·평가 (이하 “정기조사” 라 한다)하여야 한 다. ② 식품의약품안전
---	--	---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

<신 설>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
과 식품안전관리인
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
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
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업소가 제2
호 및 제3호에 해
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
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
으로 인증을 받
은 경우

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
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1항·제3항에 따
라 영업정지 2개
월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
우

4. 영업자와 그 종
업원이 제48조제
5항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지 아
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에 준하는 사항
으로서 총리령으
로 정하는 사항
을 지키지 아니
한 경우

③ (생 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u>2025년 1월</u> <u>1일부터 시행한다.</u>	⑤ <u>식품의약품안전</u> <u>처장은 정기조사</u> <u>결과 그 결과가 우</u> <u>수한 식품안전관리</u> <u>인증기준적용업소</u> <u>에 대해서는 정기</u> <u>조사를 면제하는</u> <u>등 행정적·재정적</u> <u>지원을 할 수 있</u> <u>다. 다만, 식품안</u> <u>전관리인증기준적</u> <u>용업소가 제48조</u> <u>의2제1항에 따른</u> <u>인증 유효기간 내</u> <u>에 이 법을 위반하</u> <u>여 영업의 정지,</u> <u>허가 취소 등 행정</u> <u>처분을 받은 경우</u> <u>에는 정기조사를</u> <u>면제하여서는 아니</u> <u>된다.</u>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u>2029년</u>----- -----.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40
----------	------

발의연월일 : 2024. 12. 18.

발 의 자 : 장종태 · 박홍배 · 이건태
박용갑 · 이재관 · 박해철
조계원 · 문금주 · 최민희
허성무 · 이재강 · 김 윤
채현일 · 박희승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로 구분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의3에서 규정하고,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수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출입·검사·수거를 면제하는 규정과 정기조사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기술지원 및 인증”을 “기술지원,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조사·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조사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⑦ (생 략) ⑧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 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u>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 야 한다.</u> <u>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 키지 아니한 경우</u> <u>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u> <u>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 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 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u>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 ~ ⑪ (생략)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 ⑭ (생략)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⑨ ~ ⑪ (현행과 같음)

⑫ -----

--기술지원, 인증(변경 인증을 포함한다)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

⑬ · ⑭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에 대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조사·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

<신 설>

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 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u><신 설></u> ③ (생 략)	⑤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 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조사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	--